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이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중 1호라목 “국토환경·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삭제(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별지

2) 입법예고(2026. 2. 9. ~ 3. 23.)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나. 지급대상 산지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 다.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보관할 것
 - 라. 삭제
 - 마. 임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판매단계의 유해물질(농약은 제외한다) 잔류허용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조치를 준수할 것
 - 사.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 아. 농약 및 분뇨 등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 자. 하천수의 사용·관리(임업용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3항을 준수할 것
 - 차.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 카. 퇴비·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 파.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2. 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연 락 처	(042) 481 - 1241